

안전한 보육, 행복한 동행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Contents 목차

PART 01 아동학대 예방

I.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01 아동학대 개념	6
0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7
03 아동학대 현황	10

II.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

0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15
02 아동학대 신고방법	17
03 아동학대 신고 처리과정	20

III.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01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특성	23
02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 사례	27
03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29

IV.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와 교사의 정신건강 -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01 정신건강의 이해	30
02 어린이집의 물리적·인적 환경과 정신건강	31
03 영유아·교사 정신건강의 실제 -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32

PART 02 아동 성폭력 · 실종 예방

I. 아동 성폭력 예방

01 아동 성폭력의 정의	50
02 아동 성폭력 현황	52
03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53
04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56

II. 아동 실종 예방

01 실종에 대한 이해	58
02 아동 실종 · 유괴 예방교육	60
03 실종 · 유괴 예방수칙	63
04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64
05 실종예방 관련 정보	66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PART

01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

I .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II .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

III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IV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와 교사의
정신건강

-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I.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01 아동학대 개념

1)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처벌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
-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아동이 부모,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함

-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를 가하거나(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돌보지 않아(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의 복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모두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음

0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핍박하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뺨치기,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뜨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 - 흔들린 아이 증후군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화상 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등

2)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학대를 지켜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행동적 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 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구체적인 행위	행동적 징후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성적 행동지표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수면장애

4) 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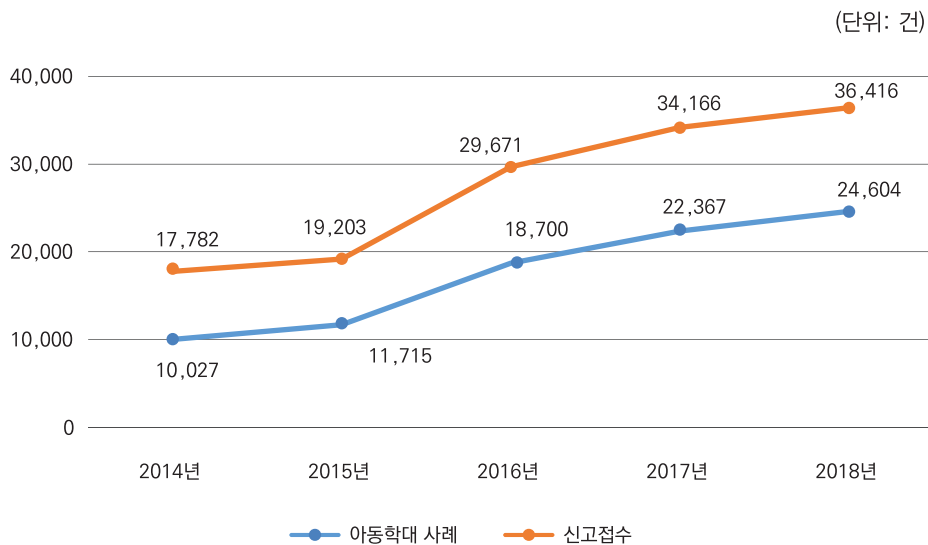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에 무단 결석을 시키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행동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잦은 결석

03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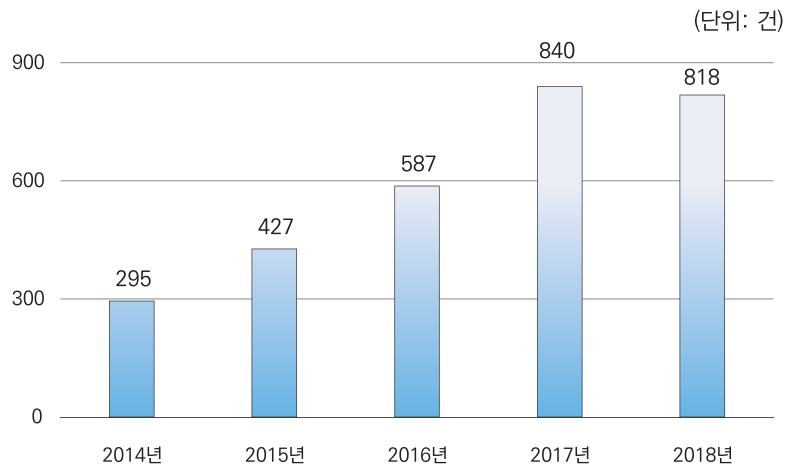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건수는 총 36,416건으로 전년도 34,166건보다 약 6.6% 증가하였음
- 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결과는 총 24,604건으로 전년도 22,367건보다 약 10.0% 증가한 것으로 2014년에 1만 건을 넘어선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그림 1-1]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발생 건수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현황

- 2018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818건(3.3%)으로 나타남.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2건이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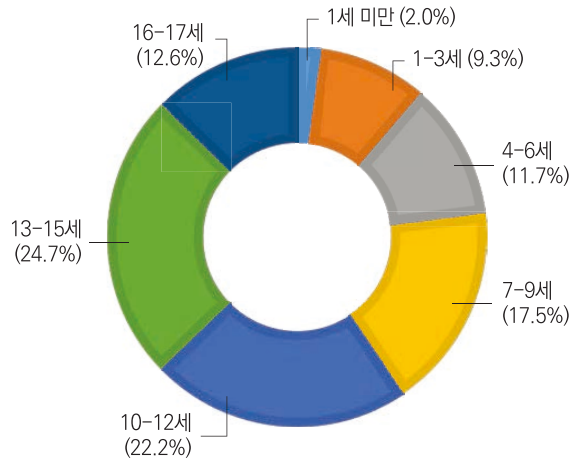
[그림 1-2]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

2)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 피해아동 연령은 만 13-15세가 전체 24.7%로 가장 높았으며, 만 6세 이하도 5,660건으로 전체 23.0%로 나타나 영유아 학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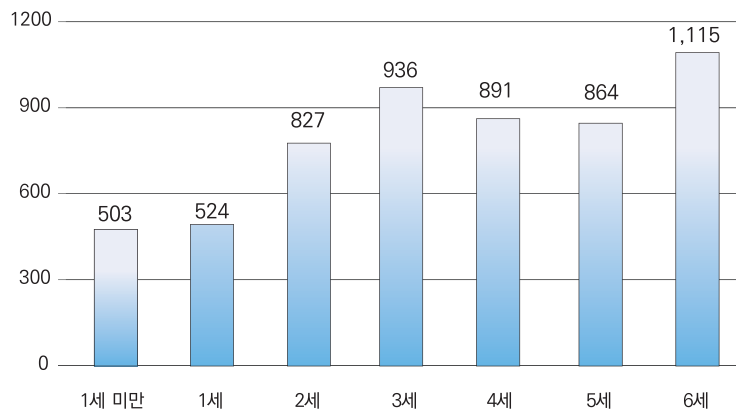
〈표 1-1〉 피해아동 연령

구분	계	1세 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건수	24,604	503	2,287	2,870	4,309	5,450	6,072	3,113
비율(%)	100.0	2.0	9.3	11.7	17.5	22.2	24.7	12.6



[그림 1-3] 피해아동 연령

■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학대피해 연령을 살펴보면 2세 이하의 영아보다 3-6세의 유아에서 아동학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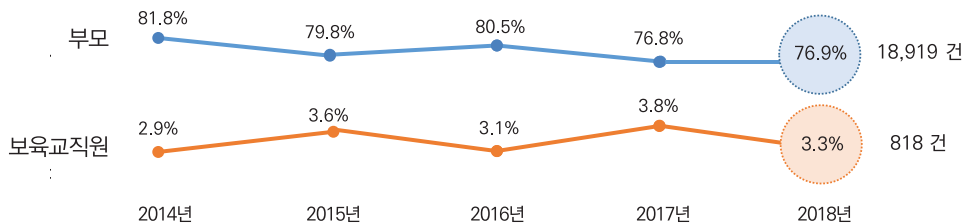


[그림 1-4] 만 6세 이하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3) 아동학대 행위자와 발생장소

(1)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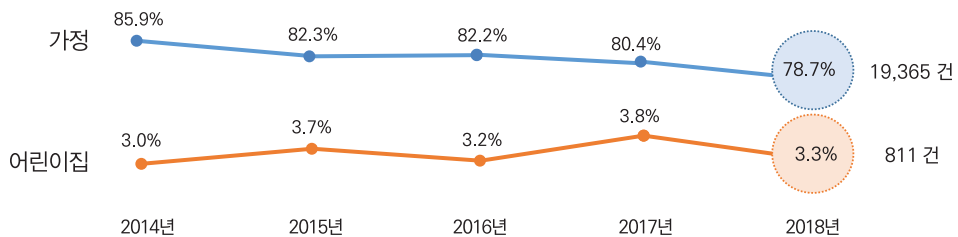
- 2018년 아동학대사례 24,604건 중 부모가 18,919건(76.9%)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양육자 3,906건(15.9%), 친인척 1,114건(4.5%) 순이었음
-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2,060건(8.4%)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818건(3.3%)으로 나타남
-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행위는 전체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나, 어린이집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



[그림 1-5] 연도별 아동학대 행위자

(2) 아동학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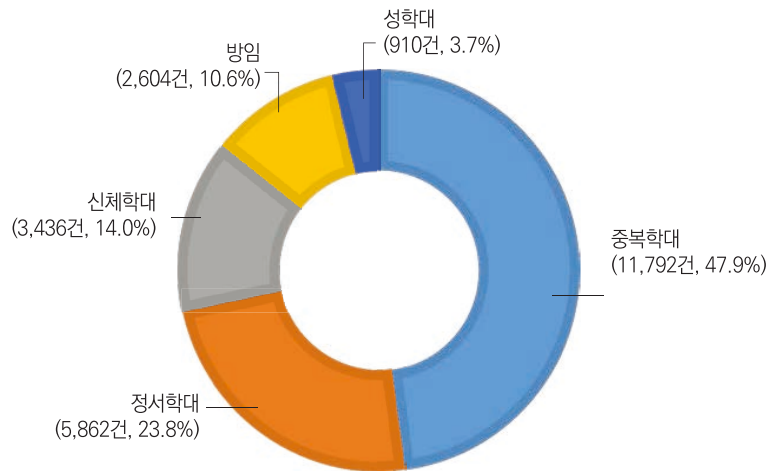
- 아동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9,365건(78.7%)으로 가장 높았음
- 어린이집 내 발생건수는 전년도 843건보다 32건이 감소한 811건(3.3%)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건수 감소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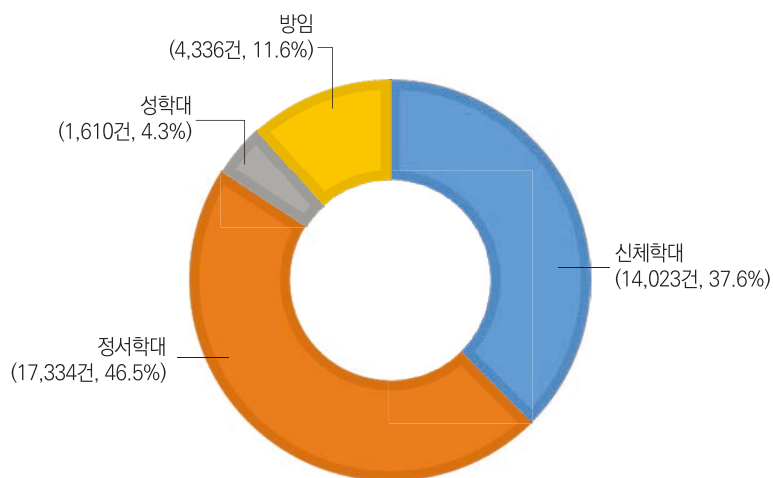
[그림 1-6]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장소

4) 아동학대 발생유형

-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복학대가 11,792건(47.9%)으로 가장 높았음. 이어 정서학대 5,862건(23.8%), 신체학대 3,436건(14.0%), 방임 2,604건(10.6%), 성학대 910건(3.7%) 순으로 나타남
- 중복학대를 분류하지 않고, 학대 유형에 포함한 결과 정서학대가 46.5%로 가장 높았고, 신체학대 37.6%, 방임 11.6%, 성학대 4.3% 순이었음



[그림 1-7] 아동학대 발생유형



[그림 1-8] 아동학대 발생유형_ 중복학대 미분류

Ⅱ.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

0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보육교직원의 2018년 아동학대 신고는 전체 0.6%(213건)로 전년보다 0.4% 감소함(1.0%→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63조

제1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제6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함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시행령 제26조)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내용: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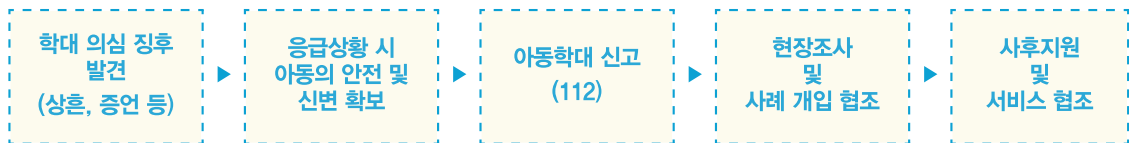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해 보호규정이 마련됨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02 아동학대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학대 신고절차]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 신고

- 학대 의심 시에도 112 신고 가능(아이지킴콜앱 112 활용 가능)
- 아동학대 의심 정황과 지역/ 구체적인 응급상황(아동의 안전여부, 학대의 심각성 등) 설명/ 피해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특징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몰라도 신고 가능

■ 아동에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등 긴박한 상황에는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후 신고

■ 아동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교사가 함께 아동 조사에 참여 가능

아동학대 신고전화 예시

OO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익명으로 신고가능).

OO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_____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아동의 현재 상황은 _____입니다.

※ 아동의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상황 등

아동의 인적사항은 _____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학대행위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_____입니다.

※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신고자는 _____입니다(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등).

※ 익명으로 신고 가능

* 출처: 교육부 · 보건복지부(2016), 유치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 대응 매뉴얼.

2) 아동학대 신고

(1)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학대를 발견했거나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에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함

-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상흔, 폭행으로 보이는 상처를 발견한 경우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여름에 긴팔, 터틀넥 티 등)을 입는 경우
- 아동이 잘 씻지 않고 위생상태가 열악한 경우
- 아동이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결석하는 경우(부모와 연락되지 않음)
- 조숙한 성지식 등

(2) 어린이집 아동 결석관리

■ 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하는 경우, 부모가 보육교사에게 유선이나 스마트 알림장 등 대화방법을 통해 어린이집에 알려야 함

■ 2일 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가정방문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 기관(112)에 신고해야 함

(매일) 영유아 건강·안전 확인 및 결석 아동의 결석 사유 확인

- 부모는 유선, 스마트알림장 등 대화방법을 통해 교사와 아동의 결석 사유 공유
- 교사는 아동 결석 당일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결석 사유 확인

(무단결석) 2일 이상 어린이집 무단 결석 아동 발생 시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

- 가정방문은 보육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3)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처나 징후가 있다면 먼저 보호자와 이야기하고 설명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함
-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직접 아동을 상담하기 보다는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신고를 통하여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 아동 진술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 하지 않기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 확보하기(몸의 상흔 등)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고, 신고 후 신고자와 피해 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03 아동학대 신고 처리과정

1)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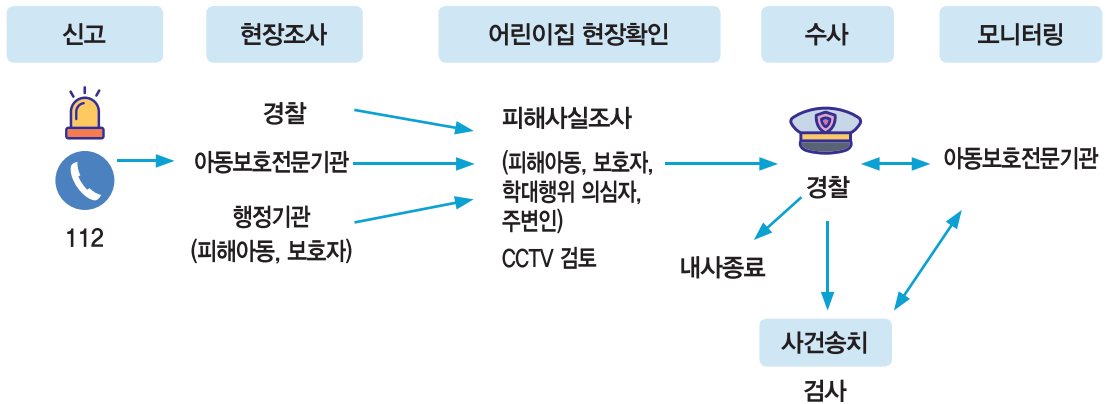
〈표 1-2〉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개입과정	역할
1.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신고접수〉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 - 24시간 신고전화운영(112) ■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시 현장조사 실시(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호 통보) 〈현장조사〉 ■ 상담원 2인 1조 출동(경찰 우선/동행 출동) ■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 (필수조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 (추가조사)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 아동학대혐의 판단(사법적 판단은 아니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 판단)
2.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피해아동 보호조치〉 ■ 응급조치: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또는 필요시 의료기관으로 인도 ■ 학대피해아동쉼터 - 피해아동 보호·생활 지원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 보호명령 - 피해아동 보호위탁, 상담 및 치료위탁, 가정위탁,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 및 정지* * 보조인 및 후견인 선임 〈학대행위자 조치〉 ■ 응급조치: 학대행위자 범죄 행위 제지 및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임시조치: 학대행위자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 친권·후견인 행사제한 및 정지, 상담 및 교육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 보호명령: 행위자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제한, 행위자 친권 정지
3. 사례관리	■ 피해아동: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사건처리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등 ■ 가족: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4. 사후관리	■ 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 연계기관으로 사례 이관 - 재학대 발생여부 확인 ■ 종결 및 사후관리

2) 아동학대 신고 시 사건 처리과정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¹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함
- 현장조사를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 등을 확보하고 보호자와 피해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 의심자와 원장과 교사 등 주변인을 조사함²
-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고 하여 모두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며, 경찰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종결 혹은 불기소 의견 송치, 혐의가 있을 시 기소의견 송치를 해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됨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사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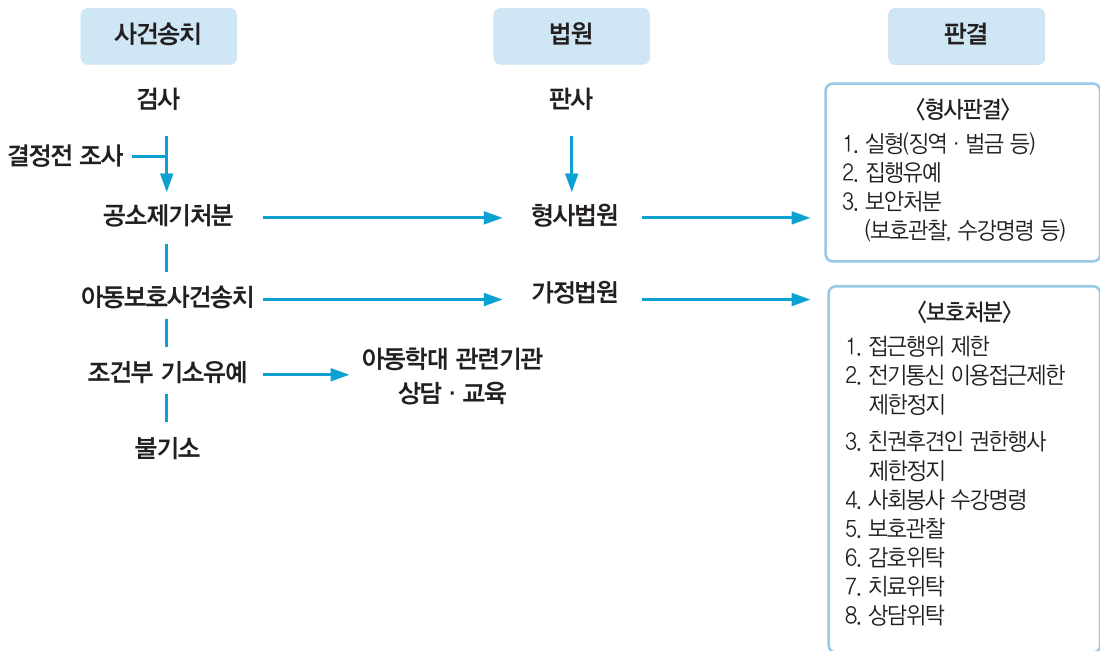


1 아동학대전담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은 아동학대예방과 수사활동,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전담하며 장기 결석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에 반드시 출동하여 학대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와 아동연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APO는 미취학 아동 및 초중등 결석과 아동학대 뿐 아니라 향후 노인 장애인 학대를 총괄하는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2 경찰의 경우 사복을 입고 어린이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는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을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결정 전 조사³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통해 ‘공소제기 처분’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아동학대예방 관련기관에서의 상담, 교육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만약 공소제기 처분으로 형사법원이 ‘아동학대치사’로 형사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불가), ‘학대중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상습아동학대’의 경우 벌금형없이 1/2까지 가중 처벌되며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종료 ·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⁴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에 제한됨(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사례가 다수임

[아동학대 판결사례에 대한 사건 처리]



3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19년 6월 12일 시행)에 따라 기존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10년으로 일괄적용 되었으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변경되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Ⅲ.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01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특성

1) 피해아동 행위와 보육교직원의 학대 행위

- 보육교직원의 학대행위는 대부분 ‘밀치기, 때리기, 잡아당기기, 꿀밤, 분리하기,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소리 지르기, 부적절한 언어사용하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을 억압하고, 벌주고, 교직원의 말에 무조건 따르게 하려는 강압적인 행위가 특징적으로 나타남
- 아동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강요하기보다 아동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먼저 인정해야 하며, 아동의 행동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함
- ❖ 보육교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행위’임

〈표 1-3〉 피해아동 행위와 보육교직원의 학대 행위⁵⁾

순위	피해아동 행위	역할
1순위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 (대집단 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음, 낮잠을 자지 않음, 상황이 명확하지 않음 등)	- 꿀밤 - 엉덩이, 얼굴, 팔, 머리, 어깨 때리기 - 얼굴을 잡고 흔들기 - 발로 밀기, 발로 차기 - 꼬집기 - (다수의 아동) 끌고 가기 - 소리 지르기 - 방치하기 -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기 - 아동이 잘 때 몸 위에 담요나 쿠션 올려두기 - 머리를 눌러 제압하다 아동의 얼굴이 책상에 부딪히게 하기 - 아동의 머리끼리 부딪히기 - 밀쳐 넘어뜨리기 - 머리 밀치기 - 손을 꼭 잡기 - 잡아끌기 -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기 - 가두기 - 다른 반으로 보내기 - 베란다에 가두기 - 앉았다 일어났다 70회 시키기
2순위	이유 없음	- 폭언 - 머리 발로 치기 -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는 종교활동 실시하기 -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기 - 사고 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기 - 분무기로 뿌리기 - 차량에 두고 내리기 - 배달음식(자장면)으로 급식 시행하기 - 어린 영아를 방에 가두기 - 학대 행위 목격하게 하기 - 뺨 때리기 -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 뺄기 - 사고 시 대처하지 않기 - 밀치기 - 하루 종일 바운서에 묶어 놓기 -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기 - 아동이 울 때까지 때리기 - 밥, 죽, 반찬을 모두 섞어 먹이기 - 낮잠시간에 아동 방치하기

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13년~2015년'까지의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제시한 것임

순위	피해아동 행위	역할
3순위	식사 습관의 문제 (밥을 늦게 먹음, 편식함)	- 억지로 먹이기 - 아동이 토하는데도 억지로 먹이기 - 입안에 있는 것을 억지로 빼기 - 식판을 치며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 아동의 머리끼리 부딪히기 - 등 때리기 - 체벌(자로 발바닥 때리기) - 아동의 옷에 일부러 음식을 묻히기 - 꿀밤 - 어두운 교실에서 밥 먹이기 - 허벅지 때리기 - 꼬집기 - 분리하기 - 잡아끌기 - 점심 늦게 제공하기, 점심 제공하지 않기
4순위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함 (소리 지름, 뛰어다님, 높은 곳에 올라감, 친구와 장난침, 밖으로 나감, 울음, 교재교구를 부숨)	- 꿀밤 - 등 때리기 - 얼굴 때리기 - 코, 볼, 귀를 꼬집어 멍들게 하기 - 팔을 잡고 끌고 감, 머리를 밀치기 - 머리를 잡아당기기 - 물기 - 장시간 분리하기 - 방치하기 - 아동 얼굴에 의료용 테이프로 공갈 젓꼭지를 붙이기 - 부적절한 언어사용 - 엉덩이 때리기 - 머리 때리기 - 꼬집기 - 손바닥을 손톱으로 누르기 - 세계 흔들기 - 장시간 교실에서 제자리 뛰기 시키기 - 장시간 무시하기 - 한자리에서 생각하기(타임아웃) -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두기 - 핀셋으로 찌르기
5순위	친구와의 갈등	- 아동이 한 문제행동 따라하기(깨물기, 얼굴 때리기) - 손, 엉덩이, 입, 머리 때리기 - 바닥에 세계 내려놓기 - 아동의 발을 잡고 끌고 나가기 - 소리 지르기 - 뒤통수 잡아끌기 - 세계 밀치기
6순위	실수를 함 (용변, 컵의 물 쏟음, 음식 흘림 등)	- 밀치기 - 흘린 음식 다시 먹이기 -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기 - 엉덩이 때리기 - 방치하기

* 출처: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2)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

- 보육교직원이 식사지도를 위해 억지로 먹이고, 훈육을 핑계로 가혹한 행동을 하거나, 대집단 활동 수행을 잘 못하는 아동을 벌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등 아동의 안전에 무심한 것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에 배치되는 행위임

〈표 1-4〉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행위 특성

순위	행위특성	내용
1순위	온정적이지 않은 반응	- 아동이 울고 있는데 달래지 않고 하루 종일 방치함 -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할 때 아동을 무시하거나 방치함 · 아동이 기저귀를 간 후 바지를 입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자, 아동의 바지를 입히지 않고 30분 이상 방치함 - 부적절한 언어 사용 · 우는 아동에게 “시끄러워, 울지마”라고 말함
2순위	식사지도 문제	- 먹지 못하는 반찬을 억지로 먹임 - 토한 것을 다시 먹임/ 토한 것을 아동에게 치우도록 지시함 - 밥을 늦게 먹는 아동을 어두운 곳으로 분리시켜 밥을 먹임 - 식사 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음 - 특별활동 시간에 맞추기 위해 빨리 식사 지도를 함
3순위	체벌과 가혹한 행위를 훈육으로 알고 있음	- 체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학대로 인식하지 않음 - 손을 잡고 이야기 하는 것, 아동을 다른 장소로 분리하는 것, 다른 공간에 가두는 것, 아동을 끌고 가는 것, 장시간 분리하는 것(타임아웃) 등을 훈육으로 인식함
4순위	대집단 운영문제	- 대집단 시 교사의 다리를 만지는 아동을 힘으로 제압함 - 울동을 반대로 하거나 따라하지 못한다고 때림 -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편지를 쓰지 못한다고 방치함 - 재물잔치를 준비하며 따라하지 못하는 아동을 때리거나 밀침 - 활동을 다 하지 못한 아동을 다른 반 교사에게 훈육을 보냄
5순위	아동보호 문제	- 대변 본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음 - 머리를 세게 뺨음 - 너무 세게 이를 닦아줌 - 세면 시 아동의 얼굴이 뒤로 넘어가는 강도로 닦아 줌
6순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	- 갈등 상황에서 때린 아동을 똑같이 때림 -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아동에게 화가 나 때리거나 밀침
7순위	안전사고 대처 문제	- 사고 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치료 강행함 - 사고 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동을 귀가시킴 - 사고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3)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아야 할 부적절 행위

- 영유아에 대한 ‘부적절 행위’가 잘못된 훈육행동이라는 인식 없이 반복되거나 심화될 때 심각한 아동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 ‘child abuse’나 ‘maltreatment’ 모두 아동학대라는 의미로 해석하나 ‘maltreatment’는 ‘child abuse’를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이며, ‘부적절 행위’ 혹은 ‘부당 행위’로 번역되기도 함
- 어린이집 관리자는 평소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지도가 부적절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행위에 부적절한 소지가 없는지 자기검토 해야 함
- 최근 OCED국가에서는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영유아기관)의 종사자가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신입종사자 오리엔테이션, 관리자의 모니터링, 종사자 재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음

〈표 1-5〉 보육교직원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의 예 ⁶

영유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신체나 도구(자 등)로 영유아를 위협하거나 때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영유아를 향해 물건 등의 물체를 던지지 않는다.
	강압적으로 아동을 끌어당기거나 앉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영유아 훈육 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훈육 시 화장실이나 교구·교재실 등에 아이를 혼자 있도록 하지 않는다.
	지도 시에 영아의 손목 및 어깨 등 신체 부위에 강한 압력을 주지 않는다.
	영유아가 그대로 당해 보게 하는 반복성 행동을 하지 않는다(너도 꼬집혀 볼래?).
	cctv 사각지대로 영유아를 데리고 가서 훈육을 하지 않는다.
영유아의 기본생활요구 지원 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오염된 기저귀, 젖은 옷 등 영유아의 기본생활요구를 방치하지 않는다.
	영유아를 위협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하지 않는다.
	영유아의 의사표현(울 때, 아플 때 등) 및 요구를 모른 척 방치하지 않는다.
	영유아에게 먹기 싫은 음식을 다 먹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영유아 존중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 금지 목록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껴도 절대 이를 영유아에게 나타내지 않는다.
	영유아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한 채 교사의 기분, 감정으로 다그치지 않는다.
	영유아의 이름이 아닌 “애, 야, 너” 라는 호칭을 삼간다.
	영유아를 비교하며 조롱하거나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지 않는다.

* 출처: 이완정(2018).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당행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p.97). 한국아동권리학회.

⁶ 이 목록은 이완정(2018)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이는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에 의해 직접 도출된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도출하기 위해 첫째, 국내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둘째, 어린이집 보육교사 초점집단 예비조사를 거쳐 목록을 구성하였으며,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 행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에 문항별로 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무게 값에 따른 순서대로 최종 목록을 도출하였다.

02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 사례⁷

- 아동학대 판결 사례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인 보육교사는 주로 신체와 정서학대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복지법」 제74조에는 원장이 보육교사의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신의 주의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양벌규정⁸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피해아동의 학대 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아동이 받는 정서적 어려움도 정서학대로 판결하고 있음

판례 1 부모와 사회의 신뢰상실을 초래한 보육교사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원장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1	보육교사	학대유형	폭행, 신체학대, 정서학대	판결	징역 2년,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 학대피해 아동 행위 ① 울동을 따라하지 못함 (아동 3명) ② 점심을 늦게까지 먹고 김치를 먹지 않음 ③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아동 13명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울동 시 아동이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주저앉힘 “울동하는 것을 보지 말라” 하면서 반대쪽으로 보고 있으라고 지시함 • 식판에 남겨놓은 김치를 손가락으로 모아 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었으나, 아동이 손을 입으로 가져가 뱉어내려 하자 왼손으로 아동의 팔을 6회 세게 잡아당기듯이 쳐내고, 식판의 남은 음식을 손가락으로 모아 아동의 입에 강제로 넣음. 아동이 토해내자 화가나 손으로 아동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세게 때려 아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함. 아동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바닥으로 기어와 손으로 토사물을 집어먹게 함 • 다른 아동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함					
◆ 양형이유 • 피해아동들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불안해하는 등의 모습을 보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진단 됨 • 교사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신뢰상실을 초래함 •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의 범죄경력 있음					
학대행위자2	원장	학대유형	-	판결	벌금 500만원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학대행위자가 아동들에게 큰소리를 내고 그로 인해 아동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함					
◆ 양형이유 •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아동들에 대한 중한 범죄가 발생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7 이 제시된 판결 사례는 법원의 형사판결과 보호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으로 2014년 12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요약한 「아동학대 판례 100선」(2016년) 중에서 판결문 원본까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8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2 교사가 초범인 점을 참작한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울면서 고집 부림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4대 때리고 아동의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한쪽 구석으로 들어 옮긴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는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고, 주저앉은 아동이 발을 동동거리며 울자 아동의 다리부위를 수차례 차고, 약 30분 가량 나오지 못하게 함 ◆ 양형이유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함					

판례 3 보육교사가 딸과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을 참작한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형의 선고유예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아동이 예쁘고 통통하다는 것 말고 이유 없음,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치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아동의 양쪽 팔을 입으로 물어 멎게 함 - 아동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꼬집어 멎게 함 ◆ 양형이유 - 피고인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딸과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함					

판례 4 보육교사와 원장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한 선고 사례					
학대행위자1	보육교사	학대유형	신체·정서학대	판결	징역 1년 4개월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잠을 자지 않음, 알 수 없음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바운서에 눕혀 머리가 아래위로 흔들릴 정도로 바운서를 세게 흔들어 신체적으로 학대함 - 바운서에 아동을 묶은 뒤 분유병을 물린 채 2시간 정도 불이 꺼진 방에 혼자 놓아둠 -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아동의 몸을 잡아끌며 신체적으로 학대함 ◆ 양형이유 -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현저히 결여한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학대행위자2	원장	학대유형	신체학대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학대피해 아동 행위 : 낮잠을 자지 않음 ◆ 보육교직원 학대 행위 - 아동의 얼굴에 담요를 덮음 - 아동을 바운서에 묶는 것을 도와주고 아동에게 분유병을 물린 뒤 방에서 나가 교사가 불이 꺼진 방에 약 1시간 동안 아동을 방치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함 ◆ 양형이유 -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까지 나아갔고, 그 양태도 아동의 얼굴에 담요를 덮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참작함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03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1)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 어린이집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5~49조에 이르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자격취소, 어린이집의 폐쇄와 위반사실 공표 등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함

〈표 1-6〉 아동학대 관련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

구분	원장 · 보육교사
자격정지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둘 다 취득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

*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사업안내.

2) 위반사실의 공표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을 통해 위반시설과 위반행위자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를 함
 - 위반시설: 어린이집명, 대표자명, 원장명,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 위반행위자: 본인 이름, 법 위반 이력,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내용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위반사실의 공표’]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of the 'info.childcare.go.kr' portal. The left screenshot displays the 'Violation Facts Disclosure' page, which includes a search bar and a list of violation facts. The right screenshot displays the 'Violation Facts Disclosure' page, which includes a search bar and a list of violation facts.

Ⅳ.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와 교사의 정신건강

-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

01 정신건강의 이해

1) 정신건강이란?

- 정신건강은 심리적 안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용인된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하여 사회에 적응된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적 · 사회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 유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을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온전히 잘 지내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함. 즉, 건강을 단순히 병이 없는 질병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생존에 직결된 부분부터 삶의 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관점으로 보고 있음

2)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유전, 연령, 성차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인 갈등과 우울 증 등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심리적 요인, 가족의 문제,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 뇌조직의 손상을 가져오는 사고나 질환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음
- 전 생애 발달적 관점으로 볼 때 영유아기는 자아를 형성해가는 초기 단계로 자신의 연령에서 기대되는 발달과업을 적절히 성취하여 수행하지 못했을 때 심리적 · 행동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됨
- 최근 우리 사회의 영유아기 양육 방식은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을 살피서 지원하기보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양육환경은 영유아의 개별적인 욕구와 준비정도, 능력에 맞춰 발달과업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가 어려워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3) 영유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진단

- 개인의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2015): 이하 DSM-5’ 기준은 장애범주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의 임상적 진단에 활용되어져 왔음
-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DSM-5의 정신장애 범주에 대한 선별질문이 포함된 진단면담과 세부적인 증상에 대한 체크리스트, 심리검사 등이 활용됨
- DSM-5의 정신장애 범주 중 영유아기에 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의 문제
 - 신경발달 장애: 자폐스펙트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 우울·불안 장애: 주요우울장애, 분리불안 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
 - 급식 및 섭식 장애: 이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등
 - 배설장애: 유뇨증과 유분증 등
 - 기타: 적대적 반항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스마트폰 중독(인터넷 중독) 등

02 어린이집의 물리적 · 인적 환경과 정신건강

1) 어린이집의 환경과 영유아의 정신건강 문제

- 어린이집은 개별적인 가정 양육과는 상반된 집단 보육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지내기 위해 독특한 생활양식을 가지는 사회적인 기관임
- 자기중심적인 사고 특성과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기 아동들이 집단적 보육의 형태로 하루 일과가 진행되는 어린이집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여 생활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
- 어린이집의 물리적 · 인적 환경은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토래와 교사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2) 어린이집 환경에서 교사 정신건강의 중요성

-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성인은 교사이며, 교사의 정신건강은 영유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교사가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우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 등은 영유아의 정서에 직 ·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은 간과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어린이집 환경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 교사의 역할과 직접 관련된 것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라 할 수 있음
-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교사의 정신건강이 유지되지 않으면 교사는 개인적으로나 영유아 및 부모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지게 되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됨
- 교사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면서, 교사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어린이집 환경에서 영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03 영유아 · 교사 정신건강의 실제 -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1)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 마음 들어주기'

선생님은 영유아의 마음을 들여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영유아를 위한 일이었는지, 영유아를 존중하는 마음이었는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세요.

[상황 1]

“예쁘게 앉은 친구들 먼저 손 씻고 올 거예요.”



[상황 2]

“빨리 밥 먹은 친구들은 바깥놀이 먼저 나갈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 ① 예쁘게 앉은 것과 손을 씻는 것, 빨리 밥을 먹는 것과 바깥놀이를 나가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②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혹시 교사 중심으로 반을 운영하고자 한 말은 아니었는지 아동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례 ① 울면서 등원하는 아동



[교사의 고민]

“아침마다 울면서 등원하는 아이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우는 아이만 달래줄 수도 없고, 그냥 놔둘 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

(1) 아동이 울면서 등원하는 이유에 따른 지원

[심리적인 요인] 오랜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경우	■오랜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부모와 떨어지는 게 불안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아동이 기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와~ 지민이 왔네. 보고 싶었어 지민아~” “우리 지민이가 오랜만에 와서 그러는구나. 선생님한테 올래?”
[신체기능적인 요인] 졸리거나 몸이 아픈 경우	■아동이 졸리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울 수 있음을 인정하기 ■등원 시 아동의 컨디션을 부모와 함께 확인하고 아동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 마련하기 “지민아, 졸리니? 여기서 잠깐 쉬어볼까?”
[환경적인 요인] 가정환경의 변화나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부모의 출장, 입원 등으로 부모를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거나 어린이집 또래관계 갈등상황 등 환경적인 요인도 아동이 등원거부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가정환경, 어린이집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아동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 “오늘 지민이가 엄마와 함께 있고 싶구나.” “어제 친구랑 속상했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2) 우리 반 상황에 따른 지원

많은 아동이 등원하였고, 간식 준비 등으로 분주한 경우

- 많은 아동이 이미 등원한 상태이고, 간식 준비 등으로 분주한 경우에는 원장님이나 보조선생님 등 어린이집의 다른 성인에게 도움 요청하기
- 오랜만에 등원한 아동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과 함께 방법 찾아보기

“원장님, 잠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지민이가 많이 울어서 달래주어야 할 것 같아요.”

(3) 부모의 도움 여부에 따른 지원

아동의 부모가 잠시 도와줄 수 있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잠시 도와줄 수 있는 경우라면 부모가 잠시 어린이집에 머물 수 있도록 협조하기

(교사) “지민 어머니님, 지민이가 많이 우는데 조금 달래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모) “네, 제가 잠시 시간 되니 지민이랑 함께 있을게요.”

영유아 등원 지도 시, 이런 점을 기억해 주세요.

- ① 어린이집에 적응한 아동이라도 어린이집에 오기 싫은 날이 있음을 이해해주세요.
- ② 영아의 분리불안은 발달특성상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특성을 이해해주세요.
- ③ 우는 아동을 방치하는 것은 자칫 정서학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보육실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성인, 부모 등에 지원 요청해 보세요)

사례 ② 놀잇감 때문에 다투는 아동



[교사의 고민]

“놀잇감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꼭 같은 놀잇감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일이 많아요. 특히 쌓기영역에서는 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

(1) 아동이 놀잇감 때문에 다투는 이유에 따른 지원

새로운 놀잇감인 경우	■ 새로운 놀잇감은 아동 누구나 가지고 놀이하고 싶다는 마음 알아주기 “오늘 기차길 블록이 처음 보여서 지호가 놀고 싶었구나.”
친구와 놀고 싶어서 놀잇감을 빼앗는 경우	■ 영유아기에는 친구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여 반대로 놀잇감을 빼앗으며 놀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끼리 놀잇감을 가지고 다투는 상황을 잘 관찰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지원해 주기 ■ 친구와 함께 놀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아동과 이야기 나누기 “지호야~ 슬기가 놀던 기차길 블록을 왜 가져갔니?” “지호가 슬기와 놀고 싶었구나.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놀잇감을 서로 갖고 싶어서 다투는 경우	■ 매력적인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싶은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고 왜 다투어 일어났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며,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다투고 있다면 잠시 떨어지게 한 후) 슬기야, 지호야, 둘이 왜 싸우고 있었니?”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우리 반 놀이환경 상황에 따른 지원

전체적으로 놀잇감이 부족한 경우

- 놀이 관찰을 통해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와 놀잇감을 알아보고 적절한 지원 방법 찾아보기
- 무조건 많은 놀잇감을 제시하는 것보다 놀이 관찰을 통해 필요한 놀이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놀이를 더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지원하기

“우리 반 아이들은 기차놀이를 좋아하네. 기차길 블록이 더 필요하겠어.”

(3) 어린이집 상황에 따른 지원

다른 반과 협조할 수 있는 경우

- 특정 놀잇감이 필요한데 우리 반에 없는 경우, 어린이집 전체 놀이자료를 공유하며 동료교사에게 협조 구하기
- 평소에 어린이집 놀이자료 상황을 점검하고 놀잇감 구입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기

“혹시 하늘반에는 기차길 블록이 더 있을까요? 우리 반 아이들이 기차놀이를 좋아해서요.”

놀이지원 시, 이런 점을 기억해 주세요.

- ① 놀이는 어린이집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적절한 지원을 위한 교사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 ② 놀이 중 다툼이 일어났을 때 교사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아이들끼리 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두 아이의 입장을 모두 말하게 하며 특히 억울하거나 속상한 아이가 없도록 해요).
- ③ 영유아의 다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교사가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자칫 잡아당기기라도 하면 신체학대가 되기도 하고, 타임아웃 같은 행동지도 방법도 시간이 길어지면 정서학대가 될 수 있어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이들에게 어린이집과 선생님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사례 ③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동



[교사의 고민]

“활동 시간이면 꼭 장난을 치는 아이가 있어요.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야기나누기 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

(1) 아동이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에 따른 지원

아동이 활동주제에 흥미가 없는 경우	■ 아동에 따라서는 기질적으로 활동 자체에 흥미가 없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음. 아동이 활동 주제에 흥미가 없다면 활동 내용과 방법 바꾸어 진행해 보기 “안전교육놀이 해볼까? 어떻게 놀이하면 좋을까?”
교사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 아동에 따라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거나,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음. 늘 같은 아이들에게만 이야기 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은지, 배제되는 아이들은 없는지 살펴보기 (민수) ‘나도 말하고 싶은데...’ (교사) “우리 이번에는 민수가 이야기해 볼까?”
상상력이 풍부하며 자유롭게 개방적인 아동의 경우	■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에게 이야기 할 기회 제공하기 ■ 엉뚱한 말을 하거나 황당한 질문을 하는 아동 중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의 아동이 있음을 이해하기 “민수의 생각이 재미있네. 우리 다 같이 들어볼까?”

(2) 우리 반 상황에 따른 지원

전반적으로 활동에 흥미가 없는 경우

-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활동에 흥미가 없다면 교사가 계획한 활동 내용과 시간에 국한하지 말고 활동내용과 방법을 전환하기

(교사) “바다반 친구들~ 교통안전활동을 역할놀이로 바꾸어 볼까?”

(아동) “네, 자동차놀이해요.”

(아동) “전 운전자 할래요.”

(3) 활동방법 변경하기

활동 변경하기

- 대 · 소집단활동이라고 반드시 교사 주도일 필요가 없으며, 매일 진행하지 않아도 됨을 이해하기
- 개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은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 영유아중심의 놀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전체 놀이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기

(교사) “여기 교통안전 관련 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자동차와 같은 놀잇감도 있단다.

이것으로 어떤 활동을 해 볼까?”

(아동) “선생님~ 교통안전 영상봐요.”

(아동) “우리가 똑같이 따라 해 봐요.”

활동 진행 시, 이런 점을 기억해 주세요.

- ① 활동은 전체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므로 활동의 흐름이 끊어져서 다른 아동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② 아동의 성향에 따라 관심받고 싶어 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므로 활동내용을 고려하면서도 개별 아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③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의 아동하고만 활동을 진행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④ 활동을 교사가 계획한 대로 빨리 진행하다보면 다소 산만하거나 관심을 끌려는 아동에게 화를 내어 정서학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아동이 없도록 무리하게 활동을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사례 ④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아동



[교사의 고민]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거나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먹지 않는다고 그대로 두면 배고플 것 같고, 다른 아이들도 안 먹는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

(1)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 이유에 따른 지원

아동의 섭취 음식 양이 적은 경우	■ 성인도 먹는 양이 다르듯이 아동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차이가 날 수 있음. 아동이 섭취할 수 있는 적당량을 주고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교사) “슬기야, 왜 밥을 남겼어?” (아동) “밥이 너무 많아요.” (교사) “그래~ 슬기에게 밥을 너무 많이 줬네.”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경우	■ 특정 음식을 먹고 체한 경험이나 음식의 식감, 향, 맛 등을 싫어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지 않도록 하기. 특히 알레르기 음식 여부 꼭 확인하기 “슬기가 시금치를 먹고 배가 많이 아팠구나. 그럼 우리 다른 반찬 먹어볼까?”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경우	■ 평소에 음식을 잘 먹던 아동이라도 몸이 좋지 않으면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거나 식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 아동의 컨디션에 따라 식사지도의 방법 바꾸어보기 “슬기가 밥을 조금 밖에 못 먹었네.” “슬기가 오늘 밥 먹기 힘들구나. 그만 먹을까?”

(2) 우리 반 상황에 따른 지원

대부분의 아동은 잘 먹지만 소수의 아동이 편식하는 경우

- 다른 아동과 비교하며 식습관 지도를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개별 아동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지원하기

“슬기가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고기만 먹으면 웅가도 잘 안 나오고 배도 아플 수 있어.”
“오늘은 시금치를 조금만 먹어볼까? 와~ 슬기가 시금치를 먹었네.”

(3) 부모의 요구에 따른 지원

부모가 음식을 골고루 먹이길 원하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관심이 많은 경우

-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습관 지도만으로는 형성되지 않음을 부모에게 안내하기
- 부모가 음식을 골고루 먹이길 원하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관심이 많은 경우라면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부모와 함께 지원하기

알림장 등 원아수첩에 기록 n^ote

“슬기 어머님, 오늘 슬기가 점심시간에 시금치를 조금 먹었습니다. 꼭 칭찬해 주세요.
또한 아직은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집에서도 먹어볼 기회를 주세요.
슬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에 함께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식습관지도 시, 이런 점을 기억해 주세요

- ❶ 누구나 선호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편식 지도를 위해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세요.
- ❷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 ❸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혼자 먹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 ⑤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



[교사의 고민]

“낮잠 시간에 자지 않으려고 하는 아동이 있어요. 잠이 안 온다는 아동을 놀이하게 하면 다른 아동들도 모두 낮잠을 자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어 걱정이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

(1)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 이유에 따른 지원

어린이집 낮잠 환경이 낯선 아동의 경우	■ 아동이 집이 아닌 공간에서 친구들과 낮잠을 자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음을 이해하기 ■ 애착 인형을 활용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교사가 옆에서 토닥거리며 잠을 재워주는 등 영유아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지원하기 “서윤아~ 여기 서윤이 이불이 있네. 인형도 있고. (토닥거리며) 자장 자장.”
늦잠을 자서 잠이 오지 않는 아동의 경우	■ 낮잠을 잘 자던 아동이라도 때로는 늦잠을 자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기 ■ 무조건 재우기보다는 아동의 수면상태를 확인하고 조용한 놀이를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아동) “선생님~ 잠이 안 와요.” (교사) “서윤이가 오늘은 잠이 안 오는구나. 그럼 친구들 자니까 조용히 그림을 그려볼까?”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경우	■ 아동에 따라 수면 욕구가 높지 않아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기 ■ 잠이 오지 않는 아동을 계속 누워있게 하지 않으며, 다른 반과 협조하여 조용히 놀이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해 주기 (교사) “서윤이는 집에서도 낮잠을 자지 않니?” (아동) “네~ 잠이 안 와서 안자요.”

(2) 우리 반 상황에 따른 지원

전반적으로 아동이 낮잠을 못 자는 경우

-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낮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보육실의 낮잠 환경 점검해 보기
커튼을 내려 교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자장가 등 음악을 틀어주며 소음을 차단하였는지 등 환경 체크해 보기
- 오전에 대근육 놀이나 활동을 계획하는 등 일과운영 점검해 보기

‘오전에 바깥놀이를 계획해볼까?’
‘대근육 신체활동하며 에너지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3) 어린이집 상황에 따른 지원

낮잠 시간에 공동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 교사들이 공동 업무를 해야 할 때도 보육실을 비워서는 안 되는 점 기억하기
- 사전에 공동 업무 장소가 정해졌다면 아동들이 낮잠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환경 고려해 주기
간혹 교사들 간 말소리가 아동의 낮잠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기

낮잠 시간 동안 교사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경우

- 낮잠 시간에 교사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책임 있는 성인이 아이들과 함께 하기
어린이집 내 다른 성인(원장, 보조교사)의 지원을 받거나, 다른 반과 협조하여 통합반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음을 고려하기

어린이집 낮잠 시간, 이런 점을 기억해 주세요.

- ① 낮잠은 아동의 건강상태와 전날의 숙면 여부, 잠잘 때 습관 등 개별적인 성향을 파악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 ② 잠을 재울 때와 깨울 때 모두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해주세요.
- ③ 낮잠을 재우기 위해 억박지르거나, 무조건 누워있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2)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나의 마음 마주하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반 아이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니 “선생님! 뭐 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이 가슴에 닿아 맺혔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속상해집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로 떠들썩하던 다음 날,

“CCTV 좀 보여주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많다는데...”

부모님의 차가운 눈빛 하나에 마치 아동학대 범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다친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속상한데...

부모님의 신뢰받지 못한 눈빛에도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고 웃어야 하는

‘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① 그냥 화가 나요!



[교사의 고민]

“요즘, 아이들이 울고 떼쓰는 소리, 싸우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다짐하며 출근하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큰 소리를 낼 때가 많아요.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뜻해요.
- 분노, 우울, 무력감, 소진 등의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므로 직무 스트레스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 ① 과도한 업무에 시간이 부족할 때
- ② 직무수행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 ③ 보육교사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 ④ 업무 자율성이 부족하거나, 업무환경이 불안정할 때

② 교사의 감정조절 지원 방법을 찾아 보세요.

- 영유아의 울음소리, 떼쓰는 소리, 싸우는 소리 등에 갑자기 ‘화’가 난다면?
 - 일단 화가 나는 상황을 피해요.
 - 어린이집의 다른 성인(원장·동료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 분노 감정이 자주 일어난다면?
 - 스트레스 요인을 알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 해보세요.
 - 취미생활, 운동, 명상 등 개인적인 충전시간을 가져보세요.

번아웃 증후군(Burn out)

번아웃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뜻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임.
다른 말로 '소진증후군'이라고도 표현함

▶ 번아웃 증후군의 경고 증상

- 기력이 없고 의욕이 없는 느낌이 든다.
- 쉽게 짜증이 나며 화가 치민다.
- 직무에 대한 거부감과 자기혐오감이 든다.
- 감정의 소진이 심하며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힘들다.

사례 ② 할 일이 많아요.



[교사의 고민]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반 운영을 하고 싶지만, 어린이집 행사에 서류 작성, 환경구성, 대청소 등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저 혼자 책임져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효율적인 어린이집 업무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 업무의 양, 소요시간, 중요도를 파악해요.

- 우리 반 업무&공동업무, 업무의 중요도와 양에 따른 소요시간을 체크해요.
- 매일 동일한 업무라면, 업무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한 업무를 함께 처리하여 시간을 절약해요.

-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 업무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요.
- 공동업무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요.

- **하루 전날, 또는 아침에 수행해야 할 업무를 미리 체크해 주세요.**

- 매일 할 일을 체크하고, 꼭 기억해야 할 업무는 메모하여 보육실에 게시해요.
- 보육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영유아 보육’임을 상기해요.

② 보육교직원 간 협력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세요.

- **교사회의를 통해 업무분장하기**

- 민주적인 교사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업무분장을 실시해요.

- **업무분장 시, 교사 경력 및 적성, 다양한 능력 등을 고려해요.**

- 업무분장을 할 때는 현 보육교사의 기존 업무량(반 원아 상황 등), 경력, 개별적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요.

- **업무분장은 유연하며 언제든지 변경 가능**

- 업무분장 이후, 어린이집 및 교사 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체크 포인트

- ▶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중요한 것은 ‘영유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 있다면 우선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 ▶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서류나 행사 등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은지, 업무분장 전 사전 체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세요.

사례 ③ 부모와의 소통이 힘들어요.



[교사의 고민]

“요즘은 아이들보다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한 명의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어떤 부모님은 낮잠을 꼭 재워 달라 하시고, 또 다른 부모님은 낮잠을 재우지 말라하시고요. 작은 상처에도 선생님은 뭐 하셨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부모와 원만한 관계 맺는 방법

-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부모와 신뢰감 형성
 - 영유아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 상황 모면을 위한 대처는 부모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어요.

(교사) “하원 준비하면서 보니까 영진이 팔에 멍이 들어 있네요. 바깥놀이터에서 다친 것 같은데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부모) “아니에요. 영진이가 다쳐서 속상하지만 선생님께서 상황을 알려주셔서安心이 됩니다.”

- 보육교사와 부모의 양방향 의사소통
 - 개별수첩, 전화, 등·하원 상담 등의 비정기적 상담 등을 활용하여 양방향 의사소통을 해주세요.
 - 연 2회 정기 부모상담 시에는 영유아 관찰기록 등을 바탕으로 보육전문가로서 상담을 해주세요.
-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부모참여 기회 제공
 - 부모참관, 부모교육, 부모참여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부모참여를 독려해 주세요.

체크 포인트

- 교사와 부모는 서로 협력하여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는 관계예요.
-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불안감, 기대감이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참고문헌

- 경기 Wifi(2018).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시스템, 무엇이 문제일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1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제 5-1호).
-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김아름, 박은영, 김재선(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박선권(2018).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NARS현안분석 vol.4. 국회입법 조사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 우현경(2017). 어린이집에 다니는 3~4세 유아의 또래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완정(2018).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부당행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p.97). 한국아동권리학회.
- 이혜란, 김진이, 김소연(2017). 아동과 교사를 위한 정신건강. 서울:학지사.
- 전병주, 최은영(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치안정책연구, 제3권 제1호 pp. 119-15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new/)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9).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 온라인 영상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
- Hilt, R. J. & Nussbaum, A. M.(2016). DSM-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가이드북(DSM-5 Pocket Guide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강진령 역(2018). 서울:학지사.

PART

02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 성폭력 · 실종 예방

I. 아동 성폭력 예방

II. 아동 실종 예방

I. 아동 성폭력 예방

01 아동 성폭력의 정의

1) 법률적 관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만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임상심리학적 관점

-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의미함
-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장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음

3)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

-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된 것을 의미함

4) 성폭력의 예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 등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빼는 것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중요한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는 행동
-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
-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신체 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이나 놀리는 행동
- 야한 사진이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행동
- 아동이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거나 행동을 함께 하는 것

-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가 모두 해당됨.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음

02 아동 성폭력 현황

1)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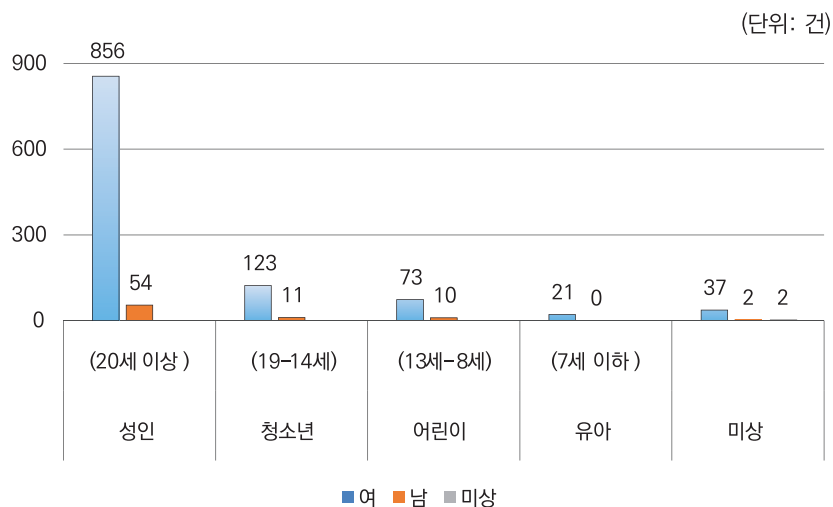
-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전체건수 1,189건 중 1,110건(93.3%)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연령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피해자가 910건(76.5%)으로 가장 높으며, 청소년피해자(19세-14세)가 134건(11.2%), 어린이피해자(13-8세)가 83건(7.0%), 유아피해자(7세 이하)가 21건(1.8%)로 나타남

〈표 2-1〉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 현황

(단위: 건(%))

성별 \ 연령대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계
여	856 (72.0)	123 (10.3)	73 (6.2)	21 (1.8)	37 (3.1)	1,110 (93.4)
남	54 (4.5)	11 (0.9)	10 (0.8)	-	2 (0.2)	77 (6.4)
미상	-	-	-	-	2 (0.2)	2 (0.2)
계	910 (76.5)	134 (11.2)	83 (7.0)	21 (1.8)	41 (3.5)	1,189 (100.0)

* 출처: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그림 2-1]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 현황

2) 영유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1,189건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029건(8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유아의 경우에는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13건(61.9%)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전체 21건 중 20건으로 95.2%를 차지하였음

〈표 2-2〉 영유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구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상	계
	친·인척		동네사람	유치원/학원			
	친족	친족의 인척					
영유아 (7세 이하)	6 (28.6)	7 (33.3)	4 (19.0)	3 (14.3)	-	1 (4.8)	21 (100.0)

* 출처: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03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1)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 아동에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접촉에도 기분 좋은 접촉과 기분 나쁜 접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리게 함
-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 교사나 부모에게 언제라도 이야기하라고 알려주고, 반대로 아동 스스로도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알려줌
- 그림이나 사진자료, 인형 등을 통해 신체구조와 차이,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어른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때로는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음을 알려 줌
-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함

2) 아동간 성폭력 예방

-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런 행동이 아닌 보통의 아동들보다 과도하게 성적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교육과 조치가 필요함
- 만3세~5세 어린 아동이라도 성적 호기심이 높아지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상호적이라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음
- 아동이 문제행동, 과잉행동 등을 하였을 시 그 행동 원인을 살펴봐야 함
 - 성행위에 노출됐을 가능성
 - 애착의 결핍 가능성
 - 인터넷문화 특히 만화, 영상(스마트폰) 등은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음(모방범죄)
- 아동은 자신의 행동이 ‘성적괴롭힘’이라는 인식은 없을 수도 있으나, 나쁜행동이라는 인식들은 대부분 갖고 있음(“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마”)
- 타인의 성적 영역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줌 – 동의개념
 - 상대방이 싫으면 포옹도 해서는 안 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중요 부위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함

3) 주의사항

- 아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함
- 과도하게 ‘성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조하여 주의시키거나 관심을 끌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함
- 아동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아동이 혼란스럽지 않게 설명해주며, 문제발생시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과 따뜻한 포옹 등도 중요함
- 아동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원함
- 어른들의 눈으로부터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육공간에서 문제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함

아동의 특징

① 아동은 힘이 없다.

② 아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동은 안전과 성교육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이러한 취약성은 더 커질 수 있다.

③ 아동은 모든 성인을 믿는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8세 이하의 어린이는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든 성인을 잘 믿는다. 심지어 근처강간이나 가정폭력으로 교도소에 있다할지라도 아동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④ 아동은 성인의 동기나 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동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요하기 위해 강제, 속임수, 위협, 물질공세, 갈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grooming이란 가해자가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가해자는 아동과 자주 마주치기,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주기 등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하며, 성폭력을 할 때 아동에게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Piaget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의하면 특히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외모나 태도 또는 나타난 행동의 결과로 선악을 판단한다고 한다.

⑤ 아동은 성폭력을 애정표현이나 애정의 증거로 오해하기도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은 성폭력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보통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해자들은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행한 뒤 “너를 예뻐해 준거야”, “사랑해서~”라고 아이를 속이기도 한다.

04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1)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지 않기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한숨 쉬는 행동 등을 표현할 경우 아동은 자신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

■ 야단치지 않기

“왜 조심하지 않았니?”, “왜 도망가지 않았어?”라는 말은 아동에 대한 질책이 될 수 있으며, 아동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다독여 줌

■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기

어른이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덤덤하게 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또 아동의 행동을 비난하지 말아야 함

■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기

피해를 당한 아동이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함
아동이 힘들었던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줌

■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부모나 교사의 성 인지나 가치관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함

■ 너무 자세하게 캐묻지 않기

아동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말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그냥 얼버무리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수도 있음.
아동의 혼란스러운 기분을 충분히 안정시킨 후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줌

■ 가능한 증거를 보존하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정액이나 혈흔 등이 묻은 중요한 증거물을 없애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증거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기억해주세요.

- ▶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 ▶ 아동에게 피해사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 ▶ 피해사실에 대해 아동에게 반복해서 묻거나 확인하지 마세요.
- ▶ 아동이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 못하게 막지 말고 잘 듣고 공감해 주세요.
- ▶ 가해자, 피해공간 등 피해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하세요.
- ▶ 사건 처리과정에 아동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 ▶ 아동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2) 성폭력 피해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구분	소개	연락처 등
해바라기 아동센터 	• 폭력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중심의 종합 서비스와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 및 보호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돕는다.	http://www.child1375.or.kr 1899-3075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http://www.korea1391.go.kr 아동지킴이콜: 112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1차적 긴급 지원센터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이 필요한 여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신고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및 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한다.	https://www.women1366.kr 전국 어디서나 1366/ 1년365일 24시간 HOT-LINE 운영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사)한국성폭력상담소(2018).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Ⅱ. 아동 실종 예방

01 실종에 대한 이해

1) 실종아동의 정의 및 유형

-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함. 아동등이란 실종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의미함

〈표 2-3〉 실종 아동의 유형

미아	유괴	가출	사고	유기
공공장소 등에서 아동이 길을 잃는 경우	금전, 성적 만족, 양육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아동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	사고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버린 경우

2) 실종·유괴 예방교육 관련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관련 용어] 보호자,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신상정보, 사전등록, 위치추적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도모를 위해 2005년 제정되었음.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위해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음

3) 실종아동 현황

- 2019년 11월 기준 실종아동 신고 접수 건은 19,949건, 미발견 아동은 87건으로, 미발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됨

〈표 2-4〉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미발견 현황

(단위: 건)

구분	18세 미만 아동	
	접수*	미발견**
총 누적	-	689
2015년	19,428	1
2016년	19,870	4
2017년	19,956	5
2018년	21,980	10
2019년 11월	19,949	87

(*접수: 당해연도, **미발견: '19. 11월말,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의 2018·2019 사업보고서

〈표 2-5〉 실종아동 기간별 현황(장기실종아동)

('19.10.기준, 경찰청, 단위: 건)

계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20년	유기
684	99	18	15	58	494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아동

4) 실종으로 인한 문제

〈표 2-6〉 실종으로 인한 문제

대상	문제점 및 어려움
개인	부모와의 분리경험은 안전한 양육기회 박탈로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위협을 받음
가족	-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짐 - 일에 대한 의욕상실과 찾기 활동 매진으로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실직과 이직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문제가 야기됨 - 실종아동 찾기에 대한 부부 간의 이견과 스트레스로 부부갈등 심화, 가족해체 유발 - 부모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실종아동의 형제·자매의 경우 신체·정서적으로 방임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
사회	- 사회적 불안과 불신 분위기를 조성함 - 실종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가정이 해체되고 별거, 이혼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남

02 아동 실종 · 유괴 예방교육

1) 실종 · 유괴 예방교육 내용

- 실종 · 유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므로 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황 판단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한 역할극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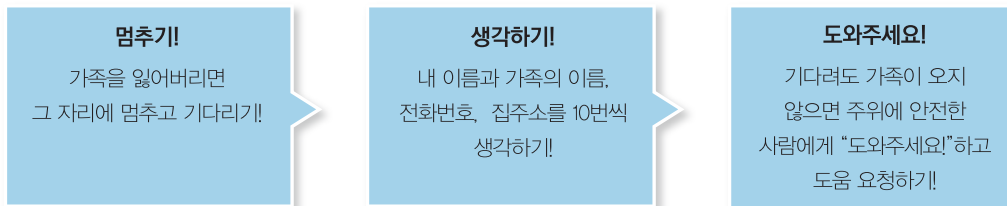
〈표 2-7〉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종 · 유괴의 예방 · 방지교육’

실시주기(총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 유괴범에 대한 개념 •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1) 미아 예방교육

- 미아상황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고 길을 잃고 당황하면 평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아예방 3단계 구호를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며 안전요원, 아이와 함께 있는 성인, 경찰, 안전지킴이집 등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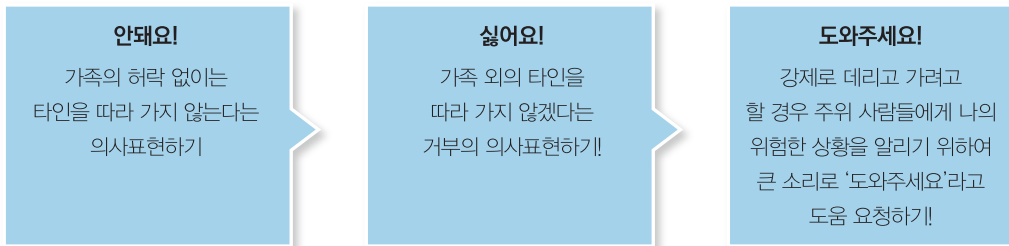
[미아 예방 3단계 구호]



(2) 유괴 예방교육

- 영유아는 무서운 인상의 모습을 한 사람을 유괴범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유괴범은 오히려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영유아와 안면이 있거나 부모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므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부모(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아는 사람이어도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함
- 유괴범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직접 재연하여 역할극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며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면 분명하게 저항하도록 연습하되 소리치는 것이 생명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지를 분별하도록 교육함

[유괴 예방 3단계 구호]



〈표 2-8〉 아동·유괴 범죄의 유형과 특성

유형	특성 및 지도방법	대처방법
호기심유발형	• 아동이 좋아하는 것으로 호기심을 유발하여 유인함 예) 설문조사를 해주면 선물을 준다고 유인함, 얼굴이 예쁘니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거나 연예인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유인함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요.”라고 말해요.
	•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여 경계심이 풀어지는 때를 노리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물건은 절대 받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	
지인사칭형	• 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 이웃으로 가장하여 친근하게 접근함 예)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함께 이동할 것을 권유함 • 이름을 부르며 친분이 있음을 표현하며 유인함	“부모님께 먼저 여쭙볼게요.”라고 말해요.
	• 이름이나 얼굴을 알고 있어도 반드시 부모(보호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지도해야 함	
동정심유발형	• 도움을 요청하며 아동의 동정심에 호소함 예) 팔을 다쳤다고 도와달라고 유인함 • 걸어가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유인함	“다른 어른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해요.
	• 아동의 동정심을 이용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보상심리를 이용하는 유인수법임 정상적인 어른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함 • 직접 돕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한 행동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함	
물리적 강제동원형	• 무조건 강제로 끌고 감 예) 싫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가거나 차에 태움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하고 큰소리로 외쳐요. (소리를 지르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던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요)
	• 아동의 공포심을 이용한 수법으로 되도록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며 도움을 청하도록 지도함	

유괴를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

유괴범을 자극하거나 불안함을 조성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교육

- ▶ 격리된 공간에 유괴범과 단둘이 있을 경우, 울음을 참고 이야기를 잘 들을 것
- ▶ 고개를 숙이고, 유괴범의 얼굴을 가급적 보지 말 것
- ▶ 음식을 주면 먹기 싫어도 꼭 먹을 것
- ▶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03 실종 · 유괴 예방 수칙

1) 부모(보호자)가 알아야 할 실종 · 유괴예방 수칙

①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세요.

- 아동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기
- 사전등록은 안전Dream홈페이지(안전Dream 앱),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함을 숙지하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 아동이 실종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

②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 잠시 외출한다고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지 않으며, 특히 아동이 잠든 틈에 외출금지
- ※ 아이사랑 3대 실천 사항: 혼자 두지 마세요, 굶기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③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 백화점, 마트, 시장, 쇼핑몰, 영화관, 공원 등 외출 시, 아동을 잠시라도 혼자두지 않기
- 화장실을 혼자 가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것도 위험

④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 아동이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 착용하기
- 이름표 등을 착용하고,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은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놓기

⑤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

-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아동의 인적사항 적어놓기

⑥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 아동의 하루 일과와 아동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알기

⑦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세요.

- 정기적으로 아동 사진을 찍어 보관하기(사전등록된 경우 아동의 사진을 수시로 변경)

〈표 2-9〉 장소, 상황별 실종·유괴 예방지침 ⁹

놀이터, 공원에서의 실종·유괴 예방지침	- 귀가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 혼자서 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놀기 - 보호자가 항상 지켜볼 수 있는 밝고 환한 곳에서 놀기 - 누군가 다가와 유인하는 경우에는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기 -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기
집에 혼자 있을 때의 실종·유괴 예방지침	-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기 -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주의를 돌려보고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뒤 문 열기 - 집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다녀왔습니다~"하고 큰소리로 인사하면서 들어가기 - 혼자 있을 때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되도록 전화 받지 않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종·유괴 예방지침	-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살펴보는 습관 기르기 -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숫자 버튼을 누르는 곳 앞에 벽을 등지고 서기 -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면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리기 -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바로 비상 버튼을 눌러 도움 요청하기

04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1) 실종 발생 시 대처방법

① 가까운 곳을 찾아보기

- 집 근처에서 실종 시 갈만한 곳이나 자주 다니는 경로를 따라 살펴보고, 공공장소에서 실종 시에는 안내데스크나 미아보호소에 안내 방송 요청

② 주변관계망 통해 찾기

- 자주 이용하던 매장 등의 교류 통해 실종 발생 시 협조 요청하기

③ 즉시 신고하기

- 실종 신고 전화번호: 112 또는 경찰청 실종아도 찾기센터(182)
- 문자상담: #0182로 내용 및 사진 입력 후 전송
- 방문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

⁹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2018), 실종예방 그림놀이

실종아동 발생 시 신고사항¹⁰

- ▶ 아동의 이름
- ▶ 아동의 나이(생년월일)
- ▶ 잃어버린 일시와 장소
- ▶ 잃어버리게 된 자세한 경위
- ▶ 실종 발생 당시 아동이 입고 있던 옷차림과 신발, 소품, 신체특징(얼굴모양, 머리모양, 흉터나 점 등의 여부, 안경 착용 여부, 키, 몸무게 등)
- ▶ 아동의 최근 사진(가능한 다른 모습이 담긴 최근 사진 여러 장)
- ▶ 부모 이름 및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주소

2)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¹¹

- 아동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함
- 가장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함
- 아동이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동의 부모를 기다림. 아동이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떨어진 경우 아동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경우가 많음
- 아동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래줌. 아동이 집에 간다고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됨
- 아동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하여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아봄
-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하여 실종아동 찾기 안내방송을 요청해야 함
- 아동을 실종아동보호센터, 경찰서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동을 발견한 사람의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함

¹⁰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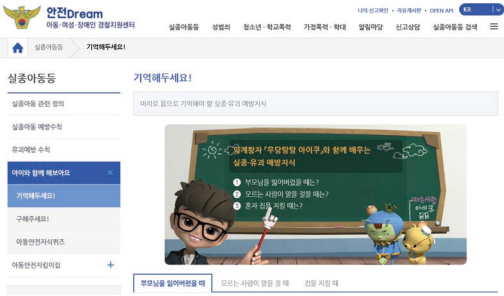
¹¹ 출처: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

05 실종예방 관련 정보

1) 실종예방 방법 및 관련제도

아동안전 지킴이집	학교주변 · 통학로 · 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	 
아동안전수호천사	신뢰성 있는 업체의 외근사원을 수호천사로 위촉하여 외근활동 중 아동보호활동을 하는 것. 현재 아쿠르트 아줌마, 집배원, 태권도 사범, 모범택시운전자회, 학원차량기사 등이 활동 중	
코드아담 (Code Adam)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의 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예방지침 ■ 조치단계: 실종 신고 접수 > 경보 발령 > 출입구 통제나 감시 > 실종자 수색 > 수색 10분 경과 시 경찰 신고(미발견 시) ■ 대상시설 :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놀이공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5,000㎡ 이상의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도시철도역사나 철도역사, 관람석 5,000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경마장 등	
앰버경보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인상착의 등 신상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여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계	
아이CU	'CU에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길을 잃은 아이(치매환자, 지적 · 자폐 · 정신장애인 포함)를 CU 매장에서 일시 보호하다가 경찰 및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BGF의 사회공헌 캠페인. CU 매장과 경찰청 신고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원터치 신고 시스템' 구축	

2) 관련 사이트

안전Dream 아동 · 여성 ·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s://www.safe182.go.kr/index.do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s://www.missingchild.or.kr/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2019). 2018·2019 사업보고서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2018). 실종예방그림놀이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 안전드림Dream 아동 · 여성 ·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

202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

기획 · 총괄

성명	소속	직위
우현경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선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팀장
윤상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보육전문요원

감수

분야	감수
아동학대 예방	강동훈 과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 예방	정인자 공동대표(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실종 예방	선미현 강사(실종아동전문기관)

2019년 집필

분야	집필
아동학대 예방	이완정 교수(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김훈숙 원장(인천성모병원어린이집)
성폭력 예방	정인자 공동대표(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실종 예방	이기순 강사(실종아동전문기관)

디자인 · 인쇄 (주)현대아트컴

발행처 어린이안전공제회

발행일 제1판 2020년 3월

ISBN 979-11-85610-39-9

※ 이 책에 실린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있으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